성인을 위한 금융이야기

1 현명한 금융생활과 지혜

2. 금융감독원 서비스 제도

금융감독원

1. 현명한 금융생활과 지혜

(1) 예.적금 관련 유의사항

(2) 신용카드 거래시 유의사항

(3)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4) 투자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

(5) 기타 금융 거래시 유의사항

(6) 금융생활에서의 위험성

1. 예 • 적금 관련 유의사항

● 통장 개설시 유의사항

◈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거래

◈ 통장과 거래인감을 본인이 보관➡ 통장, 거래인감을 분리 보관

◈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추정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정

- 1234,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결혼기념일 등은 제외

◈ 비밀번호 누설 주의

- 통장에 기재 금지
- 경찰관 사칭하는 자 등에게 누설 주의

1. 예 • 적금 관련 유의사항

● 예금 입금 • 인출의 경우

◈ 입금시 : 은행직원이 통장, 입금의뢰서, 현금을 확인하는지 등을 주시

◈ 인출시 : 창구에서 현금 및 통장상 인출금액을 확인

◈ ATM기 이용시 :

- 비밀번호 입력시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주의
- 현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은행직원에게 연락
- 거래영수증, 현금카드, 현금 등을 확인

◈ 이체 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 하드디스크 보관 금지 : OTP사용 권장

1. 예 • 적금 관련 유의사항

● 예금 통장 등 분실(도난)의 경우

◈ 예금통장, 인감 등 분실한 경우 즉시 유선으로 신고

◈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 등을 기록 유지

◈ 현금카드 분실시

- 비밀번호
- 카드번호
- 예금계좌

} **모두 변경해야 안전 !!!**

2. 담보(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다름

● 담보(보증) 종류별로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

◈ 포괄근담보 : 담보한도 내에서 차주가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대출(보증) 등 모든 과목의 채무

◈ 한정근담보 : 담보한도 내에서 대출과목이 통산 2~3과목에 한정된 채무 (신규, 재대출)

◈ 특정근담보 : 담보한도 내에서 대출과목이 1개 과목에 특정된 채무

◈ 특정채무보증(담보) : 현재의 특정된 개별채무(채무증액불가)

◈ 담보(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 범위가 상이 : 포괄근 및 한정근의 경우 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자의 당해 은행에 대한 다른 채무까지 책임질 수 있음에 유의

2. 담보제공 및 보증의 내용 확인 후 자필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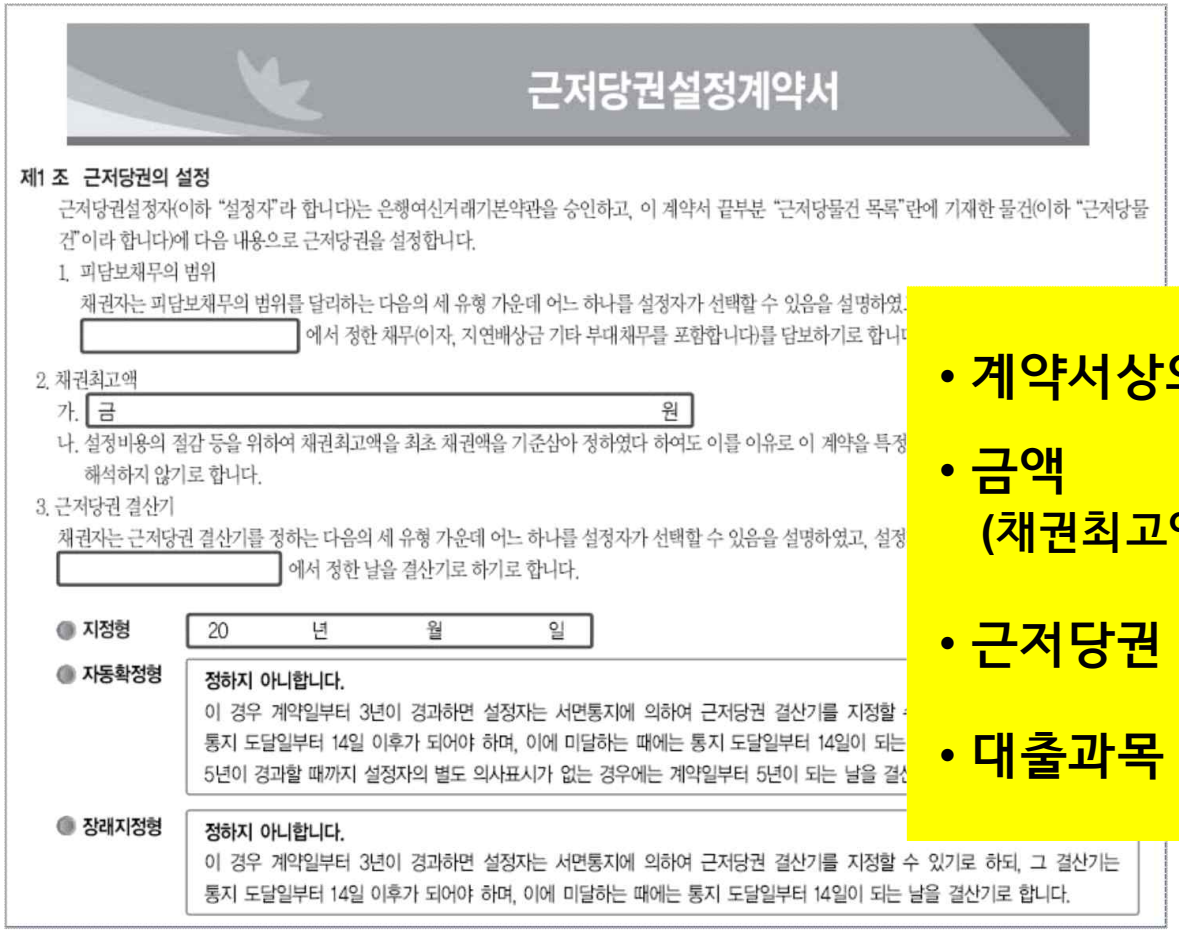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 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 "근저당물건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합니다)에 다음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

[ ]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

2. 채권최고액

가. [금 원]

나. 설정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최초 채권액을 기준삼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특정

해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3. 근저당권 결산기

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

[ ]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 지정형 [20 년 월 일]

◉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

◉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 **계약서상의 차주**
- **금액**
  (채권최고액, 보증한도)
- **근저당권 설정기간**
- **대출과목 및 금액**

본인이 직접 확인 · 작성

3. 은행에 담보 설정된 부동산 매매 (채무인수인계의 경우)

매수인

담보 해지시 상환하여야 할 채무 합계액을 **매매계약 체결 전**에 담보권자인 은행으로부터 확인**(서면으로 보관)**

매도인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담보관련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 추후 동 대출금 연체에 대한 불이익 방지

※ 부동산계약서상에 대출관련사항 기재요망

- 매수인이 대출의 인수여부 등을 판단할 때, 기존 대출이 정책자금대출 등 저리의 대출일 경우에는 채무 인수가 유리하며, 정책자금이 아닐 경우에는 신규대출이 유리 (카드사용 및 펀드 가입 등으로 신규시 대출금리 인하 가능)

4. 금융실명제 관련

금융실명법의 내용 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

  -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함 (법§ 3①)

  - 실지명의란 다음과 같음 (법 시행령§ 3)

  · 개인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번호

  · 법인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 명 및 등록번호 등

  · 법인 아닌 단체 :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개인의 실지명의

  - 실지 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과태료 등 처벌대상이나 예금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

4. 금융실명제 관련

- **실명확인에 따른 예금주 판단**

  - 금융기관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 개설을 한 경우 예금주는 원칙적으로 **당해 예금의 명의인**

  - 다만,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는 예금반환채권을 차용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귀속 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출연자를 예금주로 봄**

*** 판례는 세금특례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 직원이 차명으로 예금을 하도록 권유한 경우 등은 출연자를 예금주로 판단(대법원 99다 67031)**

1. 현명한 금융생활과 지혜

(1) 은행 거래시 유의사항

(2) 신용카드 거래시 유의사항

(3)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4) 투자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

(5) 기타 금융 거래시 유의사항

(6) 금융생활에서의 위험성

1. 신용카드란?

신용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용되는 카드, 표찰, 증서, 기타 신용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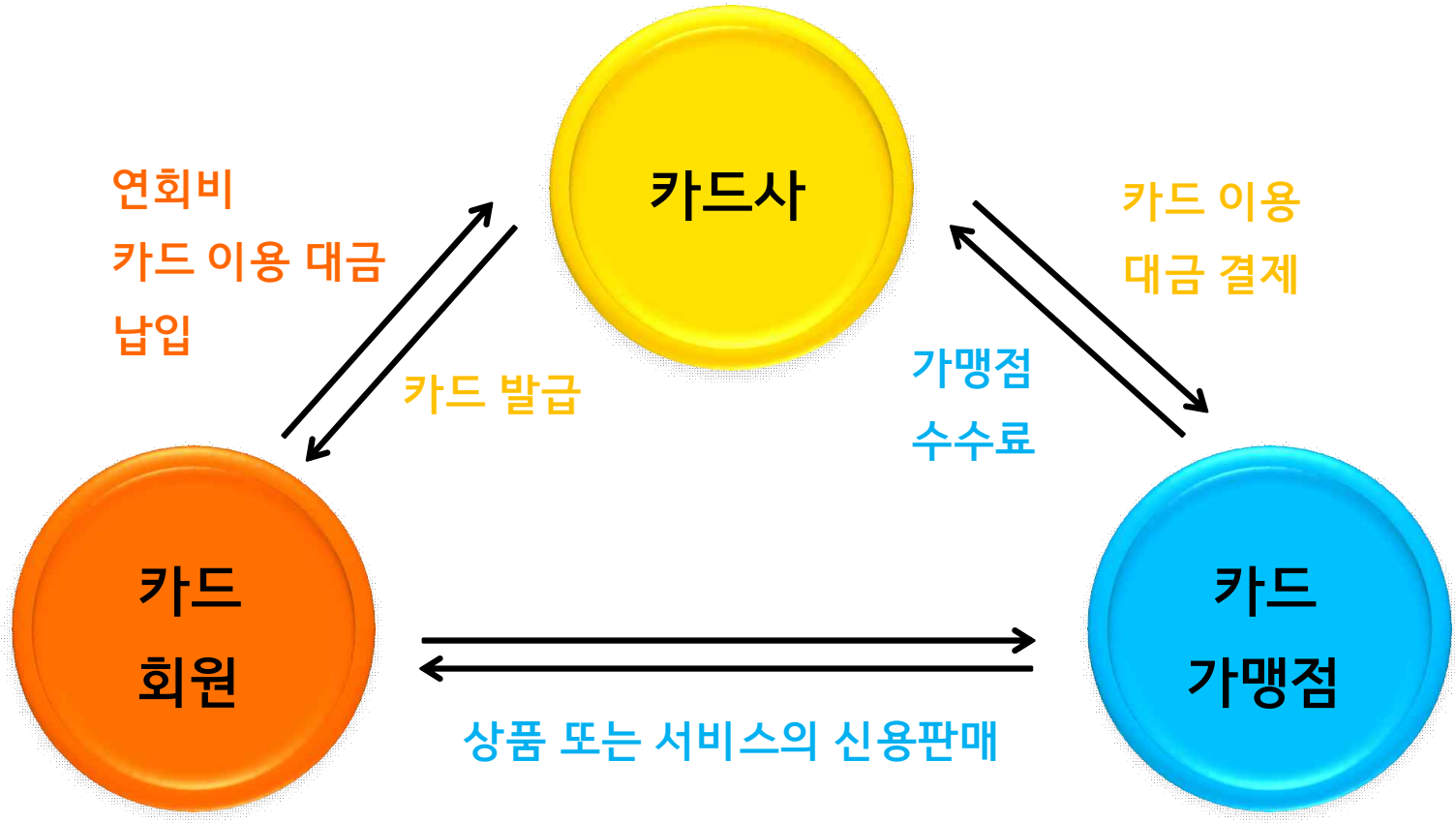

2. 나에게 맞는 신용카드 고르기

- 내 소득은 얼마나 되나?
- 내 소득은 규칙적인가?
- 나는 소득 중 얼마를 소비하는가?
- 주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소비하는가?
- 나는 충동적인 소비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가?

소득이 불규칙적!
지출 통제능력이 부족!

→

신용카드 사용금지!
대안 : 직불카드, 체크카드

2. 나에게 맞는 신용카드 고르기

신용카드 한도 설정하기

- **자신의 소득에 근거해서 신용카드 사용한도 설정**
  - **신용카드사에서 설정해 주는 한도 (X)**
  - **자신의 부채상환 능력 근거로 설정 (O)**

* 한달 소득의 25%이상을 부채상환에 사용

→ 저축 불가

3. 신용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발급 받았을 때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알아내기 어려운 것으로 지정

분쟁사례

김○○은 2008. 1.14 아침에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 즉시 신고하였으나, 이미 총 1400만원의 현금이 인출되었음.

그러나 비밀번호가 민원인의 출생년도인 1955이고, 신분증과 함께 분실하여 습득자가 쉽게 추정할 수 있었으므로 보상이 어려움

3. 신용카드 사용하기

카드를 받은 즉시 뒷면에 서명

분쟁사례

A씨는 2007. 9월 초 술집에서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서 확인해 보니 2007. 8월경 A씨의 집에서 자고 간 친구 B씨가 카드를 훔쳐 사용한 후 미국으로 간 사실을 알게 됨.

그러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B씨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 A씨가 책임을 지게 됨.

➡ **카드 서명이 없으면 부정 사용에 대해 보상 불가**

3. 신용카드 사용하기

카드 분실사실 안 즉시 신고해야

분쟁사례

B씨는 2000.12. 5. 친구들과 술자리를 같이한 후 버스를 타고 귀가했는데, 다음날 출근길에 카드분실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과정에서 분실카드 7장중 1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누락했고, 카드사는 제3자가 분실신고를 누락한 카드로 부정사용한 카드대금 3백만원에 대하여 B씨의 과실책임을 물어 보상을 거절

➡ **카드 분실신고 지체 시 보상 곤란**

4. 신용카드 사용관련 사고예방 지침

- 도난이나 분실한 경우 이를 안 즉시 카드사에 신고한다.
- 카드는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다.
-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는 피한다.
- 카드를 여러개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는 각각 다른 것으로 한다.
- 카드를 수령하고 반드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한다.
- 한꺼번에 여러개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 카드 발급시 직접 수령한다.
- 분실 · 도난에 대비하여 카드 뒷면 서명부분을 복사해서 따로 보관한다.
- 카드청구서 수령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카드사에 통보한다.
- 지갑을 분실했다가 찾았을 때에는 지갑에 든 신용카드가 본인 것인지 확인한다.
- 업소명이 매출 전표상의 업소명과 다른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한다.
- 쓰지 않는 카드는 완전히 절단하여 폐기하고 반드시 카드사에 탈퇴신청한다.

1. 현명한 금융생활과 지혜

(1) 은행 거래시 유의사항

(2) 신용카드 거래시 유의사항

(3)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4) 투자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

(5) 기타 금융 거래시 유의사항

(6) 금융생활에서의 위험성

1. 생명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중도해약의 경우 환불 받을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또는 전혀 없을 수도 있음.
단, 보험가입 후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의사를 신청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음

※ 단, 1개월이 경과해도, 보험회사가 "3대 기본지키기"(①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교부, ② 약관의 주요내용 미설명, ③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미서명)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및 기납입보험료 반환 가능

● 청약서는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음. 또한, 청약서상 질문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허위작성시 보상 X)

● 보험료 납부 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회사 발행 영수증을 받고, 보험료를 무통장 입금할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함.
(보험료 횡령에 대비)

2. 자동차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분납 보험료의 경우 납입기일후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 경과한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되므로, 동 해지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

● 보험계약후의 변동사항은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함.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당시의 계약자 주소, 차량종류, 차량용도, 차량구조, 차량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

● 무면허 운전(면허취소, 정지, 운전가능차량 위반)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단, 책임보험(대인배상 Ⅰ *),대물배상(1천만원 한도),자기신체는 보상가능

*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장애 1억원

2. 자동차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가족 운전 한정 특약’ 가입시 운전가능한 가족의 범위

- ◉ 기명피보험자
-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 ◉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 양자 또는 양녀
- ◉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 ◉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 형제는 포함안됨**

3. 교특법 위헌결정 내용

◈ ’09.2.26.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뺑소니 및 11대 중대법규 위반*사고를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대해 위헌 결정

* 11대 중과실 : 음주운전, 과속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무면허운전, 보도침범, 앞지르기위반, 철도건널목 무단통과, 개문발차, 스쿨존 (‘09.12.22)

◈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사고의 경우 금번 위헌결정으로 형사 처벌대상에 포함되나, 피해자와 합의시 형사처벌 면제

* 사망,뺑소니,10대 중과실의 경우 종전과 동일(합의와 무관, 형사처벌 대상) 단, 합의시 감안

종전에는 10대 중과실 등외에는 형사처벌 위험이 없으므로 보험처리만으로 해결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경우도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음

1. 현명한 금융생활과 지혜

(1) 은행 거래시 유의사항

(2) 신용카드 거래시 유의사항

(3)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4) 투자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

(5) 기타 금융 거래시 유의사항

(6) 금융생활에서의 위험성

1. 증권 투자시 유의사항

증권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 증권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산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여야하며, 자신의 여유자금으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 증권회사 직원에게 매매를 위임하더라도 투자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되며,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투자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요망
- 주식워런트증권, 선물·옵션거래는 단기간에 투자금액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설명서를 교부 받고 거래 제도와 특성, 거래에 따른 위험 등을 반드시 숙지

1. 증권 투자시 유의사항

계좌관련 정보, 증권카드 등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홈트레이딩시스템(HTS) 아이디 등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거래인감, 증권카드, 보안카드 등을 남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됨

→ 실제 증권회사직원의 사고사례 다수 (횡령, 임의매매 등)

● 전화주문 및 투자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녹음되는 지점 전화를 이용하고, 월간거래내역을 살펴보아 매매거래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증권회사 감사실 등에 이의제기

2. 펀드(Fund)란?

❖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 운용한 후 그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 투자상품

◈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 **직접투자 :**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직접 골라서 투자하는 것
- **간접투자 :**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자가 가입하는 것

◈ 펀드투자의 장점

- 적은 돈으로도 쉽게 투자 가능
- 분산 투자로 위험 감소
- 자산운용 전문가에 의한 간접투자

3. 펀드 관련 회사

판 매 회 사

· 펀드판매업무(가입 및 출금) 담당

· 은행, 증권, 보험, 선물 및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 펀딩된 자금을 주식, 채권 및 부동산 등에

신 탁 업 자

·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

· 펀드운용을 감시(은행,증금)

4. 해외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 **해외자산 투자펀드란?** 펀드재산의 일정부분을 다른 나라의 주식, 채권, 실물 등에 투자하는 펀드

▶ 펀드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가격변동위험,기업의 부도 위험, 금리변동위험)외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 투자대상 국가 등이 다양하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투자대상 국가 및 지역을 반드시 확인

▶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와는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 등이 부과될수 있음

▶ **환매소요기간이 국내펀드보다 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환매신청전에 환매소요기간 확인 요망**

5. 이것만은 알고 펀드에 가입하자!

◈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 미보장

•운용결과에 따라 높은 수익 또는 원금손실 가능성

◈ 투자할 펀드는 고객이 결정, 책임은 고객자신에게 있음

•투자한 펀드에 손실 발생시 판매·자산운용회사는 손실 보전 불가

◈ 펀드 투자 전 펀드 특징, 내용을 필히 확인

•펀드 특징, 내용은 투자설명서에 기재

1. 현명한 금융생활과 지혜

(1) 은행 거래시 유의사항

(2) 신용카드 거래시 유의사항

(3)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4) 투자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

(5) 기타 금융 거래시 유의사항

(6) 금융생활에서의 위험성

1. 유사금융업체(금융다단계 등)에 속지 말자

유사금융업체란?

- 정부의 인·허가없이 투자금을 받아 지급을 보장하는 업체
- 피해 발생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정부로부터 보장 불가
- 투자금 회수는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회수

  * 잔여재산이 없거나 은닉하는 경우 회수 곤란

요주의 업체

-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높은 확정 배당금 지급 약속
- 하위투자자들의 자금을 상위투자자들의 높은 배당금으로 지급
- 상호,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이 불명확하고 보안을 강조하는 업체
- 정부가 자금모집을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
- 투자자 유치시 수당을 주는 업체

2. 불법 유사금융 피해 예방요령

유사금융업체란?

- 정부로부터 관련 법률에 의해 금융회사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법상 일반회사

❖ 영업형태에 따른 분류

-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
- 돈을 빌려 주거나 중개하는 사금융업체

❖ 특 징

- 고율의 확정이자(배당금)를 약속, 불법적으로 자금모집
-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아님

3. 불법 유사수신

최근 주요유형

◉ **FX마진 거래를 가장한 투자자 모집**

- 외국환선물거래를 통한 고수익 유혹 (1개월 투자시 월 3%)

◉ **해외투자,특수기계,신기술 및 부동산개발 등으로 투자자 모집**

- 가나 금광, 마카오 카지노, 대체에너지 개발 등 투자를 가장

주요 식별요령

◉ **투자원금 무조건 100% 보장** ➡ 제도권도 5천만원까지만 보장

◉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 선**➡ 재투자하여 실제 수익은 없음

◉ **은행이 지급보증한다고 주장**➡ 해당은행에 반드시 확인

◉ **생소한 해외사업 추진**➡ 현지 확인이 어려운 점 이용

4. 사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사채업체란?

-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않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상법상의 회사 또는 개인 사업자

*** 2002년 10월 27일 대부업법 시행이후 시·도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업체를 대부업자라고 함**

사채거래시 유의사항

- 시·도에 등록업체를 이용

*** 등록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이자율 연34.9% 초과 금지**

- 대표이사 명의 영수증 필히 보관
- 협박 있을 때 녹취 등 증거물 확보
- 사채업자에 신용카드 위임 절대금지

5.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금지 →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 이용

- 미등록 대부업 영위 자체가 불법 → 5년, 5천만원 (형사처벌)
- 대부업 등록여부 문의 : 관할 지자체

◉ 불법 채권추심시 적극 대응 등

- 불법 채권추심시 증거확보후 금감원 또는 수사당국에 신고
- 채무변제와 관련된 금전지급에 대한 증빙확보 (현금수수 금지)

6. 후순위채권이란?

◉ 채권발행자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했을 때 채권의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

→ 담보부사채나 무담보사채, 기타 대출채권 등의 일반사채보다는 뒤지나 우선주나 보통주 등 주식보다는 우선

그러나 후순위채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님 !

7. 후순위채권의 투자위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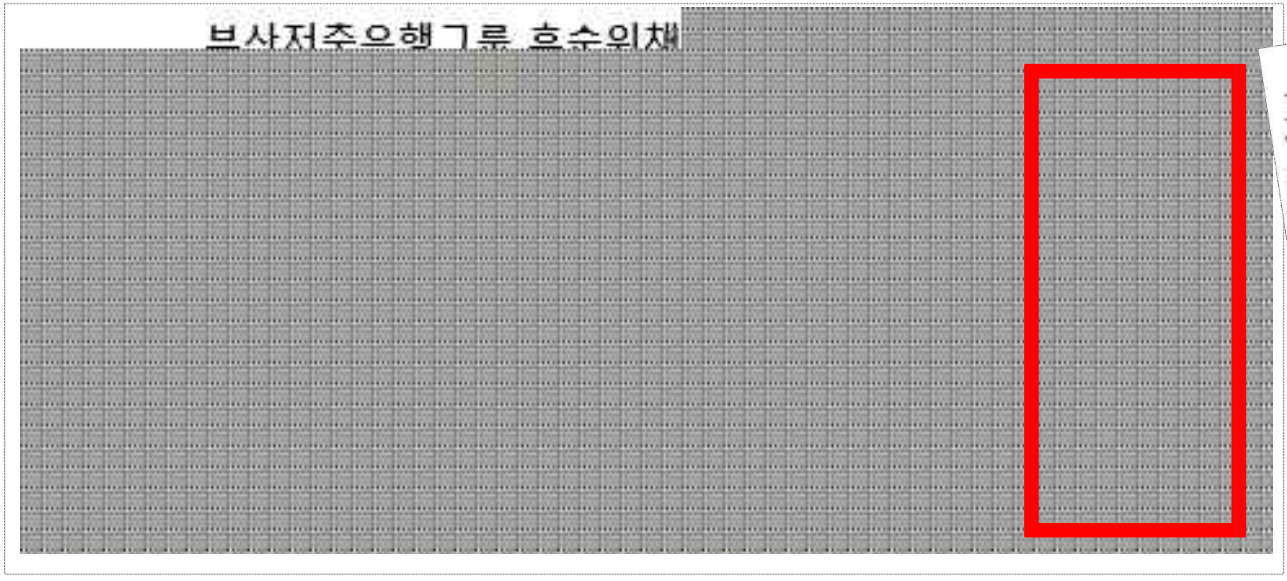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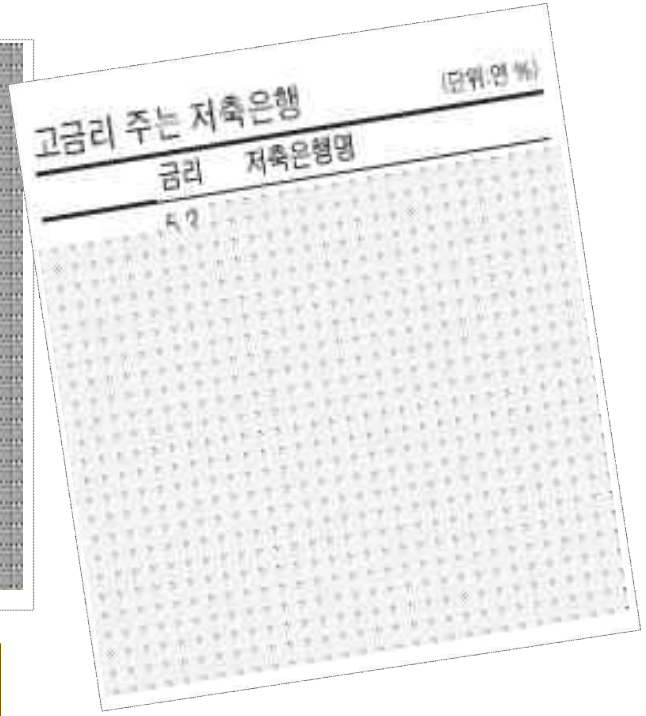

High Return, High Risk!

⬇

상장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유동성이 크게 떨어지고 발행자의 파산 시 회수가능성도 희박!

8. 예금자 보호제도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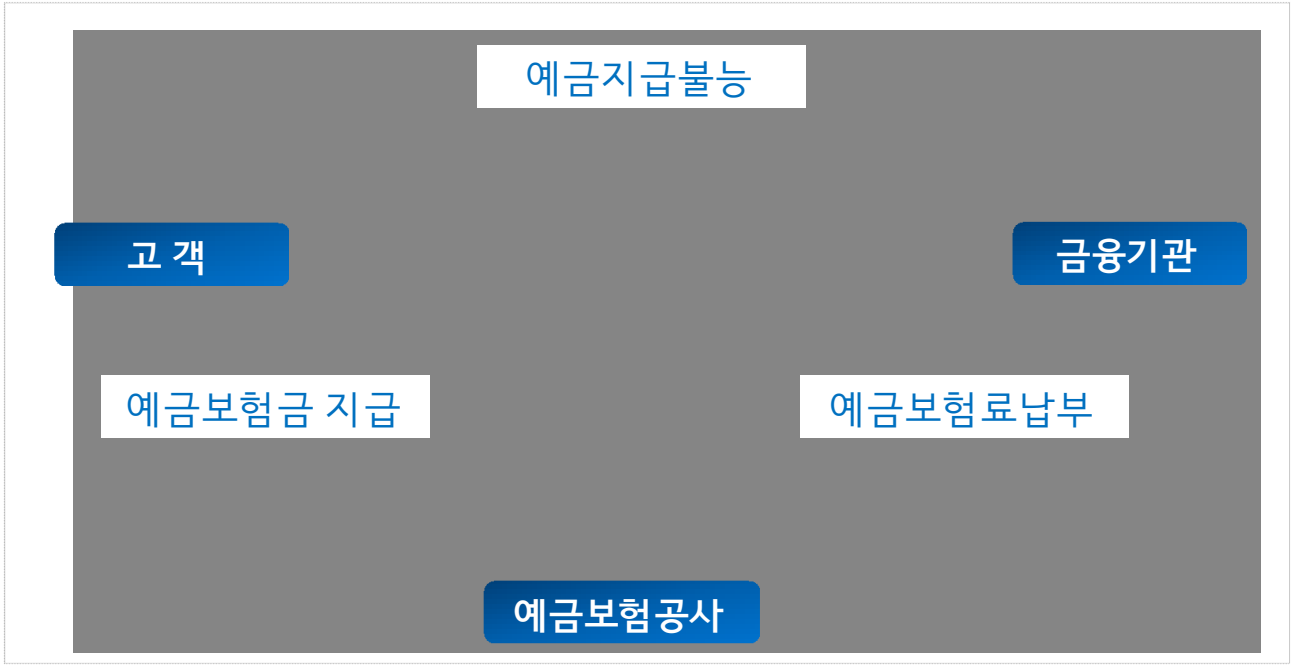

8. 예금자 보호제도 (금융기관)

◉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09.2.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의 증권회사 이외에 동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도 포함

(동 법률 제78조에 다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 제외)

◉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수협중앙회도 보호대상 금융회사

→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나,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기금에 의해 보호

8. 예금자 보호제도 (금융상품)

◉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중 만기에 원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 정기적금 등

◉ 실적배당 상품이나 수익증권 같은 투자상품은 비보호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채(RP) , 수익증권, 특정금전신탁 등

8.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보호한도)

◉ 거래하는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5,000만원까지 보호

*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 **1인당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본·지점 거래를 모두 합산

● **예금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채무액을 공제

8. 예금자 보호제도 (계산시 유의사항)

◉ 1인당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은 실명거래 확인절차를 거친 계좌기준

* 과거 예금보험공사가 동일한 거래인감 및 이자입금계좌 등을 이유로 명의예금주가 다른 계좌를 합산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적용코자 한 사례가 있었으나 법원소송에서 패소

→ 사례별 구체적인 한도적용 사례는 예금보험공사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 예금이 5천만원, 대출금이 2천만원, 타인을 위한 연대보증 3천만원이 있을 때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 5천만원에서 대출금 2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연대보증채무의 주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3천만원 지급이 보류됨

◉ 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나 해당 금융기관(파산재단)의 파산절차 참여를 통해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받을 수 있음

1. 현명한 금융생활과 지혜

(1) 은행 거래시 유의사항

(2) 신용카드 거래시 유의사항

(3)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4) 투자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

(5) 기타 금융 거래시 유의사항

(6) 금융생활에서의 위험성

1. 죽음을 부른 사채 빚

2008년 3월

돈을 받지 못한 대부업자들은 **성매매**를 '방법'으로 제시했다. 사채업자들은 '도망가지 말라'며 강남 논현동의 한 원룸(이른바 '일수방')을 얻어 생활하게 했다. **룸살롱 2차에 나가도 대출금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8년 11월

견디다 못한 이씨는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빚은 7,000만원으로 늘어난 뒤였다.

빚 : 7,000만원

1. 죽음을 부른 사채 빚

2008년 3월

아버지는 백방으로 뛰었다. 그런데 사채 업자들은 **"7,000만원 갚는다고 끝이 아니다. 다른 빚에 대한 보증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친구들과 보증이 서로 얽혀, 홀로 빠져 나온다는 건 불가능했다.

2008년 11월

11월 25일 아버지는 딸의 원룸에 찾아갔다.
아버지는 딸의 목을 졸랐고,
이틀 뒤 자신의 집 근처에서 목을 맸다.

2. 불법 채권추심 관련 법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 >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5년, 5천만)
- 채무자(보증인 포함,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3, 3)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정당한 사유없는 채무자 방문 등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3, 3)
-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지 등을 문의하면서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2. 불법 채권추심 관련 법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추심시 금지사항 >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5년, 5천만)
- 채무자(보증인 포함,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3, 3)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정당한 사유없는 채무자 방문 등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3, 3)
-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지 등을 문의하면서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2. 불법 채권추심 관련 법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8)

< 신용카드관련 채권추심시 금지사항 >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게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가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2. 불법 채권추심 관련 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09.2.6. 제정, '09.8.7. 시행)

◉ 적용대상

- 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일반채권자, 채권추심업자 및 이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의해 채권추심을 하는 자

◉ 채권추심시 금지행위(추가)

- 야간(21:00~익일08:00)에 채무자 및 관계인 방문(3,3)
  채무자,관계인에게 금전차용 등을 통해 변제자금 마련강요(3,3)
  변제의무가 없는 자에게 채무변제를 반복 요구(3,3)
  채권추심을 위하여 타인 또는 단체명칭의 무단도용(2천만원 이하 과태료)
  혼인,장례 등 곤란한 사정을 이용, 공개적으로 채권추심의사 표시(〃) 등

<참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제도 현황

지 원 제 도	내 용	이용방법	담당기관
사전채무조정제도 (Pre-Workout)	- 30일초과 90일미만 5억원이하 채무 - 다중채무 중 1개 이상 연체시 - '09.4부터 1년간 시행 - 원금감면 없고 연체이자 면제 - 최장10년 분할상황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 3개월이상 5억원이하 채무 - 원금감면 없고 연체이자면제 - 8년내 분할상환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제도권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의 고금리채무자 - 정상채무 중 30%이상금리 - 3천만원 이하, 이자율 10% 후반	1588-1288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회생	- 채무불이행상태 사채포함 전채무 - 무담보 5억,담보 10억 한도 - 5년내 분할상환	국번없이 132	법원

<참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제도 현황

지 원 제 도	내 용	이용방법	담당기관
개인파산	- 채무불이행상태 사채포함전채무 - 파산선고 후 면책 - 법률구조공단서비스	국번없이 132	법원
소액대출 (마이크로 크레딧)	- 실소득이 전국 월평균소득 100분의 60이하, 4년이내 상환 - 창업지원 2천만원(이자율 6%)	02-2274-9637	사회연대은행
	- 점포임대(5천), 운영자금(1천) - 4%, 4년이내 상환	02-365-0330	신나는 조합
긴급생활안정자금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이행자(완료자)중 저소득층 - 500만원이내, 연4%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서민맞춤대출 및 환승론 서비스	- 한국이지론(인터넷) 회원가입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맞춤대출 추천 - 고금리사채를 저금리대출로 전환	www.egloan.co.kr 02-3771-1119	

3. 보이스 피싱

Voice Phishing ⇨ 그 놈의 목소리

- 무작위로 아무한테나 전화를 걸어서
- 속는 사람한테서는 돈 빼가고
- 속지 않아도 본전인 사기수법

3. 보이스 피싱

전화금융 사기유형

- ✓ 신용카드 명의도용
- ✓ 국세청에 세금 환급
- ✓ 인터넷계좌 해킹
- ✓ 출장 간 가족 교통사고
- ✓ 아이가 유괴당했다

➡ 그들은 지금도 새로운 방법을 연구 중 …

3. 보이스 피싱

전화사기 눈치채기

- ✓ **녹음전화** 메시지로 시작
- ✓ **내가** 누군지 모른다
- ✓ **현금지급기**로 가라고 한다
- ✓ 금융감독원, 검찰, 국세청 등 **사칭**
- ✓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묻는다

3. 보이스 피싱

전화사기 피해유형 및 대응

대상 노인, 주부 등 금융지식이 약한 자

현혹 검찰,경찰,은행 등 공공기관을 사칭, 세금·보험금·등록금 환불, 신용카드 도용, 사기사건 연루를 이유

방법 은행 CD기를 이용, 이체를 유도

대응 1332 또는 각 금융기관 콜 센터 (사고방지시스템등록)

4. 전화금융사기 피해대처요령

◉ 사기범들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계좌보호 조치를 한다며 CD기로 유도하여 자금편취, 개인정보 수집

▶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사기범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금감원 또는 은행 영업점에 신고
→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 개인정보를 노출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전 금융회사가 공유하여
노출자 명의의 신규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

<사례> '08.3.18. 충주거주 이모씨(女,66세), 경찰관 사칭에 거액(9천만원) 전화사기 피해

2. 금융감독원 소개

1. 금융감독원 소개

◆ 설립경과

-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99.1.2 설립
  (공적 민간기구로써 무자본특수법인 형태)

◆ 주요기능

- **금융회사의 각종 인허가, 재무건전성 감독업무**
-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민원, 금융교육 등)**
- **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등**

※ 우체국, 새마을금고 및 각종 공제 등은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님

2. 금융감독원 대국민 서비스제도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서비스

- **금융소비자의 피해 및 불만사항을 상담 및 처리**
  - 국번없이 전화 1332번, 인터넷, 우편, 팩스 이용
- **금융분쟁사항을 비용부담없이 신속하게 처리**
  - 30일 이내 처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 현재 소액 사법권 부여 추진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내역 조회**
  - 피상속인(사망자,금치산자,실종자)의 금융거래내용 일괄조회, 대부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 신분증 지참후 금감원 방문
  - (국민, 우리은행 전 지점,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농협중앙회 전 지점 및 전국 단위농협) → 우체국,새마을금고내역도 조회는 가능

※ 상속재산중 부채가 많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가능
(상속개시 인지후 3개월이내 가정법원에 신고)

→ 부모님 재산이 없다고 상속에 신경쓰지 않으면 부모님의 빚을 물려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필요

2. 금융감독원 대국민 서비스제도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서비스

- **제도권 금융기관 여부 확인** (믿을 수 있는 곳인가?)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지역, 업종 및 금융기관명으로 금융당국의 인허가 또는 등록여부 조회

전자공시서비스 (Dart)

- **상장기업 등의 재무정보를 실시간 등록, 조회**
  - 다트(dart.fss.or.kr)를 통해 각종 보고서 조회가능
-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등 세계적으로 인정**
  - 투자의 귀재 워런버핏이 극찬한 시스템

2. 금융감독원 대국민 서비스제도

금융소비자 포탈

(consumer.fss.or.kr)

-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한 곳에**
  -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모든 금융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금융교육 홈페이지

(edu.fss.or.kr)

- **학생, 교사,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 금융교육 신청, 동영상 강의, 금융교육 책자, 온라인 금융학교 및 놀이터 등을 활용한 금융지식 함양

- **금융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

3.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서비스

민원상담

- 금융이용자의 피해 및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금융민원센터를 설치·운용

  * 전화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번 (휴대전화도 1332번)

  * 팩스, 인터넷(www.fss.or.kr)이용

분쟁조정제도

- 금융관련 분쟁에 대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용부담 없이 신속·공정하게 처리

  * 30일이내 처리

  * 당사자가 수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4.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서비스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서비스란?

- 국민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여부 확인

  *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금융회사가 불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조회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지역.업종 및 금융회사명으로 조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5. 상속인 금융 거래조회 제도

가족이 사고로 갑자기 사망했을 때

- ✓ 보험이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
- ✓ 예금이 어디에 있는지 ?
- ✓ 보증을 선 적이 있는지 ?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제도를 이용

5. 상속인 금융 거래조회 제도

이용 절차

1. 금융감독원 접수
(국민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 농협, 동양증권 등)

↓

2. 각 금융협회/금융기관에 통보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농협, 우체국…)

↓ 7~10일 후

3. 신청인에게 유선통보 / 홈페이지 확인

※ 계좌유무만 통보, 상세내역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확인